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분배 보상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근거 신설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4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미분배 보상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근거 신설(안 제25조제10항 제8호 신설)	3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외 13인

나. 발 의 일 : 2026. 1. 16.

다. 회 부 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상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기금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미분배 보상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근거 신설(안 제25조제10항 제8호 신설)

개정안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⑨ (생략)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⑪·⑫ (생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⑪·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5조¹⁾에 따르면 교과용도서 발행자 또는 대학 등은 학교교육 등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이른바 ‘교육 목적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저작권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²⁾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위 보상금은 각 지정단체들이

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현재 ‘교육목적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은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실연자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반제작자 보상금’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지정되어 있음.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후 ‘보상금 분배 공고’를 실시하는데, 공고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저작재산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미분배 보상금’은 해당 단체가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등을 비롯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는 권리자 확인 및 소재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금이 상당부분 분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계속 보관하도록 하거나 공탁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보다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위 ‘교육목적 보상금’ 관련 규정은 ‘도서관 보상금’(제31조),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제75조·제82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제76조·제83조)·공연자(제76조의2·제83조의2) 보상금’ 등³⁾에 대해서도

3)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준용되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⁴⁾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⁵⁾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4) [보상금 제도 종류]

보상금 종류		저작권법	징수 개시년도	보상금 수령단체	납부대상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25조제1항	2008년	한국문학 예술저작권 협회 (舊 복전협)	출판사
	수업목적 보상금	제25조제3항	2014년(대학) 2023년(교육기관)		대학, 교육기관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25조제4항	2016년		교육부, 교육청
도서관 보상금		제31조제6항	2004년		도서관
실연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보상금	제75조	2002년	한국음악 실연자연협회	방송사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제76조	2008년		다음송사업자
	공연보상금	제76조의2	2010년		백화점, 호텔 등
음반제작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보상금	제82조	2002년	한국연예제작자협회 (‘20년까지 음산협)	방송사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제83조	2008년		다음송사업자
	공연보상금	제83조의2	2010년		백화점, 호텔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① 정부의 출연금, ②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③ 기금 운용 수익금, ④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납입받는 출연금,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또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⁶⁾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범위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과거 공연·전시 관람료 등에 부과되던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었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⁷⁾으로 해당 부담금이 폐지된 이후 자체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

이에 따라 현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⁸⁾에 따른 복권기금, 「경륜·경정법」 제18조⁹⁾에 따른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외부 재원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경륜·경정법」

제15조(발매이익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삭제
-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임.

이러한 재원은 복권 판매량이나 경륜·경정 수익금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입 규모가 달라지고,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입금 규모가 결정되는 한시적·유동적 편성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정책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 기반을 다각화하고 외부 자원 의존도를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참고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3)이 함께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 및 내용에 따라 개정안 역시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¹⁰⁾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간 공익 목적에 사용한 미분배 보상금¹¹⁾ 약 57억 6,000만원 중 30%를 차지하는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재원 확대 관련 개정안 현황

개정안	대표발의 (의안번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재원 추가
문화예술진흥법	김재원의원 (2216123)	· 「공연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금 · 「저작권법」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공연법	김재원의원 (2216121)	·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금
저작권법	김재원의원 (2216124)	·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김재원의원 (2216122)	· 법정배분 복권수익금

11) 최근 3년('23~'25) 미분배 보상금 사용현황(약 57.6억 원)

- ① 교육·홍보 및 연구 9.3억 원(16.2%), ② 정보 관리 및 제공 5.9억 원(10.2%), ③ 창작 활동 지원 17.2억 원(29.8%), ④ 저작권 보호 사업 0(0%), ⑤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17.7 억 원(30.6%)
⑥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6.8억 원(11.9%) ⑦ 이용 활성화·공정이용 도모 0.7억 원(1.3%)

다만, 보상금은 본래 저작권재산권자의 사적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금 재원의 출처와 사용처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내 별도 계정을 분리하는 등 미분배 보상금 발생 분야에 한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일부 보상금수령단체에서는 미분배보상금이 본래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수익 발생 분야와의 연계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1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사업 사용현황('23~'25)

□ 보상금수령단체별

(단위: 백만원)

단체명	연도	미분배보상금(누적)*	공익목적사업 승인액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	2023	10,488	1,690
	2024	12,624	584
	2025	3,972	938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2023	5,542	917
	2024	6,778	917
	2025	713	-
한국연예제작자 협회	2023	6,471	510
	2024	7,869	201
	2025	167	-

* 「저작권법」 개정('25.9.26 시행)으로 미분배보상금 사용기준 변경(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 10년 경과 미분배보상금)

** '24년까지는 분배공고 후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이며 '25년은 분배공고 후 10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임

□ 사용목적별('23년~'25년) *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에 명시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비율)
① 교육·홍보 및 연구	934 (16.2%)
② 정보 관리 및 제공	585 (10.2%)
③ 창작 활동 지원	1,717 (29.8%)
④ 저작권 보호 사업	0 (0%)
⑤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1,765 (30.6%)
⑥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683 (11.9%)
⑦ 이용 활성화·공정이용 도모	73 (1.3%)
계	5,757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1-2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사업 사용 세부현황('23~'25)

□ 2025년

(단위: 백만원)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용액
계			938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창작자 및 저작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실시 (강사지원 35회)	10
	창작자 지원사업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권리자 단체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 및 지원	628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 대상 수업목적 저 작물 이용 실태조사	300

□ 2024년

(단위: 백만원)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용액
계			1,702
한국문학예 술저작권협 회	소계		584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현황 조사·분석 및 적용 가능한 수업목 적보상금 기준안 마련	41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창작자 및 저작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실 시(강사지원 25회, 창작자 연수 4회, 이용자 연수 2회)	30
	문학예술분야 저작권 사용료 연구	문학, 사진 등 저작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 수행	100
	어문저작물의 사적 복제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 연구(2차)	어문저작물 및 시각저작물의 스캔업등을 통한 디지 털로 복제하는 사적복제로 인한 피해, 대응방안 연구	53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관계법령 등 개정안 마련 연구	학교교육목적보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안 마 련	60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 대상 수 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300
한국음악실 연자연합회	소계		917
	소형 음악공연 지원사업	소형 음악공연 개최의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여 음악 창작활동과 실연기회 및 양질의 음악공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30
	우수 실연 음반 제작 지원 사업	경제적 여건상 음반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실연자에게 음반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00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용액
	실력있는 뮤지션 발굴 콘테스트	인디 뮤지션 발굴오디션 및 콘테스트를 통한 역량 있는 음악실연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	160
	음악실연자 페스티벌 KMPF	음악 실연기회 확대를 위해 대중가요, 클래식, 국악 등 전 분야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콘서트 개최 및 저작권접권 홍보	200
	방송사용 통합 모니터링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13
	정산·분배를 위한 종합전산시스템 개편사업	음악실연자 통합 거버넌스 재편 및 효율적 징수·분배의 실현을 통해 미분배금 해소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2차년도)	40
	미지급 실연권료 해소 및 보상금분배 활성화	음원 DNA를 활용한 부실연 정보 확보, 해외 제작 음반에서 발생한 사용료 징수 등 음실련 DB 고도화 추진	49
	공익사업 평가	공익사업 평가 및 회계검사 실시	25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소계		201
	방송 사용음악 통합 모니터링 구축 사업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13
	해외 상호관리계약을 위한 조사 연구	해외 상호관리 계약을 위한 조사 연구	20
	공익목적사업 평가관리 사업	24년 미분배 보상금을 통한 공모사업 정량정성 평가 시행	8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 보상금 홍보지원사업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홍보를 통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 인식 향상	60

□ 2023년

(단위: 백만원)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용액
계			3,117
한국문학예술폭발위원회	소계		1,690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창작자 및 저작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실시(강사지원 50회, 연수 4회)	137
	기계학습의 데이터 이용에 따른 현황 조사 및 대책 마련 연구	기계학습 및 데이터 공정이용에 따른 보상청구권화 방안 연구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제안	50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및 기준 개선 연구(대학)	대학 적용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및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연구	31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 및 기준 개선 세미나 운영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 및 기준 개선 세미나를 통한 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12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용액
	보상금 시스템 고도화(2단계)	보상금 정산분배 투명성 제고 및 저작권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상금 시스템 고도화 2단계사업을 통한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 및 분배율 향상	489
	창작자 지원사업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권리자 단체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 및 지원	659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 대상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200
	문학예술 전자출판 지원 사업	전자출판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 및 절판도서 등에 대하여 전자출판을 지원전 자책 60종, 오디오책 10종)	112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소계		917
	우수 실연 음반 제작 지원 사업	경제적 여건상 음반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실연자에게 음반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100
	실력있는 뮤지션 발굴 콘테스트	인디 뮤지션 발굴오디션 및 콘테스트를 통한 역량 있는 음악실연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	140
	예비 음악실연자 공연활동 지원(대학가요제)	실용음악과 재학생 등 예비 음악실연자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기관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업	100
	음악실연자 페스티벌 KMPF	음악 실연기회 확대를 위해 대중가요, 클래식, 국악 등 전 분야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콘서트 개최 및 저작권접권 홍보	100
	방송사용 통합 모니터링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25
	정산 분배를 위한 종합 전산시스템 개편사업	음악실연자 통합 거버넌스 재편 및 효율적 징수분배의 실현을 통해 미분배금 해소 및 최소화의 기반 마련	280
	미지급 실연권료 해소 및 보상금분배 활성화	부실연정보 확보, 해외 제작 음반에서 발생한 사용료 징수 등 음실연 DB고도화 추진	47
	2023 공익사업 평가	공익사업 평가 및 회계검사 실시	25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소계		510
	해외 상호관리계약을 위한 조사 연구	해외 상호관리 계약을 위한 조사 연구	30
	음반제작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	권리자의 권리이관 및 양도양수 관련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증명서 발급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상금 운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340
	방송 사용 음악 통합 모니터링 구축 사업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25
	공익목적사업 평가관리 사업	23년 미분배 보상금을 통한 공모사업 정량정성 평가 시행	15

참고 2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비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26.1.30.)	- 수정(보완) 필요 -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은 순수예술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기금 재원으로 출연할 경우 해당 재원이 조달된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가할 필요	보상금 수령단체 선정 (‘26)
한국음반산업협회 (‘26.1.30.)	- 찬성 - 개정안이 저작권법 제2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미분배 보상금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지지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보상금 수령단체 (‘88~‘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2.2)	- 찬성 -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자산을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마중물로 전환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함 - 저작권 수익을 다시 기초예술 분야로 환류시킴으로써, 새로운 콘텐츠 창작을 견인하는 투자이자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지키는 문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분배 보상금을 법적 근거(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가 명확한 문예기금으로 확충하여, 소멸되는 자금을 예술 창작을 위한 기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기관
한국방송작가협회 (‘26.1.27.)	- 신중한 재검토 필요 - 미분배 보상금은 본질적으로 개별 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적 재산적 성격의 금원임 - 미분배 보상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저작권관리단체의 자율성과 저작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틀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당 저작권관리단체가 정해진 목적의 사업에 활용 중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비고
한국연예제작 자협회 (‘26.1.29.)	- 수정(보완)을 전제로 추가검토 필요 - 미분배보상금은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결과로 발생한 금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활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제도적 보완*이 전제되어야 함 * ①권리자 탐색을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노력, 정보공개 및 통지 절차 등을 선행적으로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②사용 범위는 음반제작 지원, 권리정보 정비 등 해당 저작권 분야 및 산업 생태계로 환류되는 목적에 한정 필요, ③기금 출연 및 사용 과정에 음반제작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또는 심의 절차 마련 필요	보상금 수령단체 (‘20~’25)
한국문화예술 저작권협회 (‘26.1.30.)	- 반대 - 저작권 보상금은 본질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헌법상 보장받는 사유재산권에 해당함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용 목적은 보상권리자(창작자)를 수혜자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각 호의 사용 목적은 수혜대상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경비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양 재원의 사용 목적과 기능은 본질적으로 상이함 - 정부 출연금 및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되어야 할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부족 문제를 관련 없는 미분배 보상금으로 우회 보전하려는 것은 부적절	보상금 수령단체 (‘03~계속)